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736 발의연월일: 2022. 12. 7.

발 의 자:김형동·김용판·이주환

권성동 • 이명수 • 이헌승

임이자 · 김희곤 · 지성호

박대수 · 성일종 · 한무경

강민국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·전자제품 제조 ·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재 질·구조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재질·구조에 관한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기· 전자제품 제조·수입업자의 자료 제출과 제출된 자료의 전문기관 심 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전기·전자제품 제조·수입업자에 대한 재질·구조 개선 평가서의 제출 의무와 전문기관 심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3항·제4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 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전기·전자제품 제조·수입업자는 제1항 본문의 지침에 따라 재질·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질·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재질・구조 개선지침 등)	제10조(재질・구조 개선지침 등)
①・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전기・전자제품 제조・수입
	업자는 제1항 본문의 지침에 따
	라 재질 • 구조개선에 관한 평가
	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산
	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
	<u> 여야 한다.</u>
<u> <신 설></u>	④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
	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
	기관에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
	재질・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
	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
	같음)